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28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김한규·박상혁·박정현

이기헌 • 박민규 • 진선미

위성락 · 모경종 · 강경숙

강유정 · 정을호 · 윤호중

조 국 · 민병덕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 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

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 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. 또한,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 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,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(안 제11조 및 제12조의3).

법률 제 호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
- 나. 광고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
- 다. 가맹점사업자의 휴가 기간
- 라. 가맹점사업자의 휴가, 휴식,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의 사유로 단축된 영업 시간 동안 가맹본부의 근로자 파견·대체 영업에 관한 사항
- 마.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2조의3제2항제2호 중 "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"를 "휴식,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의 사유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영업시간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
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(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	제11조(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		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	2		
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	2		
건에 관한 사항			
<u><신 설></u>	<u>가.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</u>		
<u><신 설></u>	나. 광고 및 마케팅에 관한		
	<u>사항</u>		
<u><신 설></u>	다. 가맹점사업자의 휴가 기		
	<u>간</u>		
<u> <신 설></u>	라. 가맹점사업자의 휴가, 휴		
	식, 질병의 발병과 치료		
	등의 사유로 단축된 영업		
	시간 동안 가맹본부의 근		
	로자 파견・대체 영업에		
	<u>관한 사항</u>		
<u><신 설></u>	마.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		
	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		
	<u>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</u>		
	<u>하는 사항</u>		
3. ~ 13. (생 략)	3. ~ 13. (현행과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
다.

- 제12조의3(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) ① (생 략)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 다.
 - 1. (생략)
 - 2. 가맹점사업자가 <u>질병의 발병</u>
 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
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
 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
 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
 행위

<신 설>

제12조의3(부당한 영업시간 구속
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
(2)
1. (현행과 같음)
2
의 발병과 치료 등의 사유
③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손실
이 발생하는 등 사정의 변동으
로 인하여 약정한 영업시간이
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
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영
업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